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98 발의연월일: 2022. 12. 13.

발 의 자: 박대수·김용판·최춘식

김태호 · 최영희 · 이종성

박성민 · 김성원 · 구자근

임이자 • 조명희 • 하영제

지성호 • 윤영석 • 김형동

김상훈 · 김희곤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신청 당시의 연령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등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규정하고, 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. 또한,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.

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에게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임. 그런데 이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기간 만큼 진입 시기가 늦춰짐에도 불구하고, 현 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,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가산하 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(안 제6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중 "이하인"을 "이하(「병역법」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하 를 말한다)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	제6조(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
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	건) ①
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	
비스 수급자격이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	3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	
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	
득(이하 "기준 중위소득"이라	
한다)의 100분의 100 이하일	
것. 다만, 18세 이상 34세 <u>이하</u>	<u>이하</u>
<u>인</u>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	(「병역법」 제3조에 따른 병
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	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
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.	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
	연령 이하를 말한다)인
	–.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